

조사분석서비스 이용 및 거래 중개회사 선정에 관한 업무지침

제정 2011. 7. 1.

개정 2013.10.24.

개정 2015. 8.1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하 ‘회사’라 한다)의 운용·매매체결업무와 관련한 중개회사 등의 조사분석서비스 이용 및 거래 중개회사 선정업무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중개회사”란 자본시장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 ② “조사분석서비스”란 중개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조사분석업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③ “조사분석업무 등”이란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공하는 자료 등이 「금융투자업규정」 제4-62조에 따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분석업무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한 투자판단에 기여하는 것
 2. 독자적인 의견을 표시하고 이전에 발표된 것을 반복한 것이 아닐 것
 3. 지적인 엄밀성을 갖고 있고 일반적이고 자명한 것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닐 것
 4. 의미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자료의 분석·계산을 포함하는 것일 것
 5. 조사분석업무 등에서 제공하는 증권 등에 관한 정보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 등의 유형에 따라 일반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연관성 및 유용성이 있을 것
 6.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널리 유포된 발간물이 아닐 것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본시장법, 같은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중개회사 선정 및 평가, 조사분석서비스에 대한 관리 및 비용처리 등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대한 회사와 중개회사의 제반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이 지침은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집합투자기구가 해외운용위탁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조사분석서비스를 직접

- 제공받는 당사자가 아닌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
2. 사모집합투자기구

제4조(조사분석서비스의 구분)

- ① 집합투자업자는 중개회사로부터 조사분석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그 내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에 일반적으로 통용되거나 일상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조사분석서비스로서 집합투자업자를 위해 제공되는 조사분석서비스(이하 '집합투자업자를 위한 조사분석서비스'라 한다)
 2.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자산배분 및 투자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용성이 입증된 조사분석서비스로서 집합투자기구를 위해 제공되는(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양자 모두를 위해 제공되는 경우를 포함) 조사분석서비스(이하 '집합투자기구를 위한 조사분석서비스'라 한다)
- ② 조사분석업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를 위한 조사분석서비스로 보지 아니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홍보 및 마케팅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정보
 2.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성과 측정에 관한 서비스
 3. 재무, 회계 및 부기 등 실무 업무집행용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4. 전문가 단체의 회비
 5. 사무용품 등의 구입 또는 대여
 6.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표되어 있는 정보
 7. 국외 정치·경제 자료 등의 번역 서비스
 8. 그 밖에 제1호부터 8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집합투자업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

제5조(기본원칙)

- ① 집합투자업자는 중개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조사분석서비스에 한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조사분석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조사분석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게 된 편익에 비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중개회사 선정 및 조사분석서비스에 대한 평가)

- ①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
 2. 거래 유형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 ② 중개회사의 선정은 세미나 개최, 기업탐방 주선 및 조사분석 서비스 등 리서치 기여도와 매매 및 결제관련 집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다
- ③ 회사는 중개회사에서 제공한 집합투자기구를 위한 조사분석서비스의 가치와 적정성을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별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④ 중개회사의 선정 및 조사분석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각 운용본부 또는 팀 별로 시행하며, 세부 항목은 별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조사분석서비스평가 및 거래 중개회사 선정 위원회 등)

- ① 회사는 제7조에 따른 중개회사선정 및 조사분석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조사분석서비스평가 및 거래 중개회사 선정 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1.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 임직원
 - 2.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체결업무 담당 임직원
 - 3. 집합투자재산의 매매결제업무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 임직원

제8조(중개회사 선정 및 결과보고)

- ① 조사분석서비스 평가 및 거래중개회사 선정은 매분기별로 선정절차에 따라 다음 분기 시작 전까지 실시한다.
- ② 위 선정결과는 다음 분기 시작 전까지 운용담당임원과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9조(약정배분 결과보고) 해당 분기의 약정 배분 결과를 운용담당임원에게 보고하고 운용팀과 컴플라이언스팀에게 해당분기 익월 10영업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분석서비스 수수료의 지급)

- ① 조사분석서비스 수수료의 지급은 제6조의 중개회사 선정 결과에 따라 운용담당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정하게 집행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를 위한 조사분석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여 조사분석서비스의 이용 대가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내부통제)

- ① 준법감시담당자는 중개회사 평가 및 선정 결과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중개회사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준법감시담당자는 집합투자기구를 위한 조사분석서비스 사용 대가의 지급 방법 및 절차가 제8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의 기재의무) 회사는 집합투자기구를 위한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금융투자업규정」 제4-66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한 매매수수료 중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구분하여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기록·유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하고 10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중개회사 선정 및 조사분석서비스 평가 결과
2. 중개회사별 조사분석서비스 수수료 지급 내역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유예) 이 지침 6조 4항 및 별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회사 선정 및 조사분석서비스 평가기준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조사분석서비스 평가시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주식운용본부 중개회사 선정 및 조사분석서비스 평가기준

제정 2013.10.24

개정 2015. 8.10

1. 중개회사의 선정

(1) 중개회사의 구분 : 조사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중개회사 (이하 “일반중개사”)와 그렇지 않은 중개회사 (이하 “저가중개사”)를 구분하여 선정한다.

	일반중개사	저가중개사
수수료 배분 비율	당 운용본부가 운용중인 집합투자기 구에서 발생하는 전체 수수료의 90% 이상	당 운용본부가 운용중인 집합투자기 구에서 발생하는 전체 수수료의 10% 이하
중개사의 수	30개 이내	5개 이내
수수료율	중개사와 협의에 의하여 합리적인 수 준에서 결정	10bp 미만

2. 중개회사 및 조사분석서비스 평가기준

(1) 평가항목

구 분	내 용
1. 조사분석서비스	
(1)정성평가	
① 투자아이디어	투자 아이디어의 질
② 조사분석서비스	조사분석서비스의 질
③ 기타지원	세미나, 탐방 등
(2)정량평가	
① 베스트애널리스트	당사 선정
② 세미나, 탐방, NDR 횟수	실시 횟수
2. 매매	주문집행의 정확성 및 속도
3. 체결 및 결제업무	

- 항목별 비중은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2) 평가자 개인별 비중: 평가자의 직책, 운용규모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차등을 둘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3) 수수료 배분기준

- ① 각 중개회사별 평가 순위에 따라 수수료가 배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최종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A그룹 (10개사 이내), B그룹 (20개사 이내), 저가중개사 (5개사 이내)로 구분하며, A그룹에 45% 이상, B그룹에 45% 이하를 배분하며, 저가중개사의 경우 최종 평가점수에도 불구하고 10% 이하로 배분할 수 있다.
- ③ 각 중개회사에 배부되는 수수료는 매매체결수수료와 조사분석수수료로 구분하며, 매매체결수수료는 저가중개사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조사분석서비스수수료로 본다.

3. 적용 예외

- (1) 일임 계약의 수익자가 거래 중개사를 명시적으로 지정할 경우
- (2) 매매 상대방이 제한되어 원활한 거래가 어려운 경우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또는 주간사가 정해진 블록딜)에는 예외를 적용하되, 매매거래 전 운용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3) 거래 중개회사로 선정된 이후라도 매매 사고 및 중개회사의 신용도 저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거래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채권운용본부 중개회사 선정 및 평가기준

제정 2013.10.24

개정 2013.12.31

개정 2015. 8.10

1. 거래증권사 및 선물사 평가기준

(1) 거래증권사 선정기준

	구분	항목별 점수	최종점수
채점방식	1단계 3사	8 점	담당자 개별 채점 ⇒ 담당영역별 가중평균 ⇒ 최종점수 합산
	2단계 4사	6 점	
	3단계 5사	4 점	
	4단계 6사	2 점	
	기타 사	1 점	

담당자	항목	평가요소
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저 (90%)	자료제공 능력 및 분석방법 (30%)	- 채권시장 및 업종별, 종목별 분석자료 제공 - 구조채권, 신규 도입 채권 및 제도 등 분석자료 제공 - 기업탐방, IR 등의 기회 제공 - 의사결정방식(Top-down/Bottom-up approach) 사용여부 - 수학적, 통계적 혹은 다른 분석 기법 사용 및 활용 정도
	공급정보 제공능력 (30%)	- 채권간 스프레드 변화 및 종목간 가격피리 발생시 정보제공 능력 - 차익거래 발생시 기회 제공 가능 - 실시간 수급동향 제공 가능 능력
	기타 (20%)	- 기타 자료 및 서비스 제공 - 문의시 대응능력
	세미나 (10%)	- Macro 경제환경 및 채권시장 분석 및 전망 - Credit 관련 기업, 시장 분석 및 전망
채권 트레이 더 (5%)	거래체결능력(5%)	- 채권호가의 정확성, 신속성, 적정성
신탁회계팀 (5%)	신탁결제 업무능력 (5%)	- 결제 업무 상의 정확성 및 신속성 -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 - 결제 전반에 필요한 지식 습득 보유여부

	구분	전체 거래비율	개별 거래비율
약정배분	상위 6사	6개사 총합이 전체거래의 50% 이상	Max : 25%, Min : 6%
	중위 9사	9개사 총합이 전체거래의 40% 이상	Max : 10%
	기타 사	기타사의 총합이 전체거래의 20% 이상	Max : 10%

(2) 거래선물사 선정기준

	구분	항목별점수	최종 점수
채점방식	1단계 2사	8 점	담당자 개별 채점 ⇒ 담당영역별 가중평균 ⇒ 최종점수 합산
	2단계 3사	6 점	
	3단계 4사	4 점	
	기타 사	1 점	

담당자	항목	평가요소
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저 (90%)	자료제공 능력 및 분석방법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선물시장관련 분석자료 제공 여부 - 구조채권 및 해외채권 등 특수채권과 선물의 관계분석 및 자료제공 - 의사결정방식(Top-down/Bottom-up approach) 사용여부 - 수학적, 통계적 혹은 다른 분석 기법 사용 및 활용 정도
	공급정보 제공능력(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선물 차익거래 및 각종 거래관련 기법 제공여부 - 금융공학 기법 및 차별화된 기술적 분석기법 제공여부 - 시스템 트레이딩 관련 기법 제공 여부
	기타(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자료 및 서비스 제공 - 문의시 대응능력
	세미나(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선물시장 분석 및 전망
채권 트레이더 (5%)	거래체결 능력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입력 및 체결의 정확성 및 신속성
신탁회계팀 (5%)	신탁결제 업무능력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제 업무 상의 정확성 및 신속성 -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 - 결제 전반에 필요한 지식 습득 보유여부

	구분	전체 거래비율	개별 거래비율
약정배분	상위 4사	4개사 총합이 전체거래의 80% 이상	Max : 40%
	기타 사	기타사의 총합이 전체거래의 20% 이상	Max : 20%

- 평가자 개인별 비중 : 평가자의 직책, 운용규모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차등을 둘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3. 적용 예외

- (1) 일임 계약의 수익자가 거래 중개사를 명시적으로 지정할 경우
- (2) 매매 상대방이 제한되어 원활한 거래가 어려운 경우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또는 주간사가 정해진 블록딜)에는 예외를 적용하되, 매매거래 전 운용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3) 거래 중개회사로 선정된 이후라도 매매 사고 및 중개회사의 신용도 저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거래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QPS팀 중개회사 선정 및 조사분석서비스 평가기준

제정 2013.10.24

개정 2015. 8.10

1. 중개회사 및 리서치서비스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비중

평가항목	내 용	비중
리서치서비스	투자 아이디어, 조사분석 서비스, 세미나 제공 등	60.0%
매매수수료	매매수수료의 유불리	30.0%
트레이딩	주문집행의 정확성 및 속도	5.0%
오퍼레이션	체결 및 결제업무의 적확성	5.0%
합계		100.0%

(2) 평가 방법:

- ① 평가항목별로 매니저와 오퍼레이션팀의 의견을 종합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함.
- ② 상기 평가 항목에 대하여 항목별 배점차이가 실질적으로 비중의 효과를 갖도록 배점차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 ③ QPS팀은 상기 평가점수의 총 합계가 50점 이상인 거래처에 대하여 기존 중개거래를 유지하거나 신규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2. 수수료 배분기준

- (1) 각 중개회사에 배부되는 수수료 중 조사분석서비스에 관한 계약의 의하거나 리서치서비스를 이용하여 펀드를 운용, 평가하는 경우에는 매매체결수수료와 조사분석수수료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매체결수수료는 최저가중개회사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조사분석서비스수수료로 본다.
- (2) 거래대상 중개회사에 대하여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1그룹과 2그룹으로 구분하여 제1그룹에는 60%이상, 제2그룹에는 40%이내의 약정을 배분한다.
- (3) 이조 3항에도 불구하고, 매매빈도, 거래처의 희소성, 거래계좌이동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매 분기초 기준으로 ETF 및 주식 등의 거래대상 금액이 300억원 이하, 선물 등의 거래대상 금액이 1500억 이하인 경우에는 각 중개회사에 대한 별도의 약정 배분 기준을 두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거래대상 금액의 산정에는 일임 계약의 수익자가 거래 중개회사를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금액은 제외한다.

3. 적용 예외

- (1) 일임 계약의 수익자가 거래 중개회사를 명시적으로 지정할 경우

- (2) 매매 상대방이 제한되어 원활한 거래가 어려운 경우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또는 주간사가 정해진 블록딜)에는 예외를 적용하되, 매매거래 전 운용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3) 거래 중개회사로 선정된 이후라도 매매 사고 및 중개회사의 신용도 저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거래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